##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(11.27) 주요내용

구 분	시행내용	비고
적용공사	-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00억, 민간 300억 이상인 건설현장 ※ 단계적 시행 · '20. 11. 27 : (공공) 100억, (민간) 300억이상 · '22. 7. 1 : (공공) 50억, (민간) 100억이상 · '24. 1. 1 : (공공) 1억, (민간) 50억이상	단계별 적용
적용시기	- '20. 11. 27 이후, 입찰공고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(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 도급계약 체결일 기준)	현재 시공공시는 해당없음
적 <del>용</del> 방법	<ul> <li>발주자: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비용에서 공제부금과 전자카드 단말기・운영에 필요한 금액 정산(별도 비용반영이 필요하지 않음)</li> <li>사업주: 피공제자(근로자)에게 공제회가 지정한 전자카드 발급기관을 통해 카드를 발급하고 전자 카드 단말기를 설치・운영해야 함</li> <li>피공제자(근로자): 자신의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전자카드 단말기에 근로한 날의 출・퇴근 내역 기록</li> </ul>	